

숙명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모집요강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목 차

2021학년도 재외국민 입학전형 변경사항 안내	3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2. 전형일정	6
3. 원서접수 안내	7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8
5. 지원 자격	9
6. 제출서류	12
7. 전형방법	14
8. 전형기준	15
9. 전형료	15
[별첨1]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	16
[별첨2] 자기소개서 견본양식	17
[별첨3]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19
찾아오시는 길	20

2021학년도 재외국민 입학전형 변경사항 안내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해외 재학기간	→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	대학 자율 설정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대학 자율 설정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 2021학년도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기준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방학을 포함하고 소수점은 절사함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새터민 (정원외)	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정원외)
인 문 계	문과	한국어문학부		63	6		
		역사문화학과		32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8	2		
		중어중문학부		73	7		
		독일언어·문화학과		22	2		
		일본학과		34	3		
		문헌정보학과		26	2		
		문화관광외식학부	문화관광학전공	34	3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34	3		
		교육학부		48	1	-	-
	생활 과학	가족자원경영학과		22	2		
		아동복지학부		49	4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과		32	3		
		행정학과		30	3		
		홍보광고학과		44	4		
		소비자경제학과		24	2		
		사회심리학과		22	2		
	법과	법학부		108	10		
	경상	경제학부		68	6		
		경영학부		141	14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21	2		
			앙트러프리너십전공	18	1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81	8		
			테슬(TESL)전공	21	2		
	미디어학부			52	5		
	인문계 소계				1,127	34	제한없음
자 연 계	이과	화학과		40	4		
		생명시스템학부		48	4		
		수학과		34	3		
		통계학과		41	4		
	공과	화공생명공학부		63	6		
		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60	6		
			전자공학전공	40	4		
			응용물리전공	40	4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전공	60	6		
			소프트웨어융합전공	30	3		
		기계시스템학부		50	5		
		기초공학부		80	6		
	생활 과학	의류학과		31	3		
		식품영양학과		40	4		
	약학	약학부		80	-	-	-
	자연계 소계				737	6	제한없음

계 열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새터민 (정원외)	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정원외)
예 · 체 능 계	이과	체육교육과		26	-	-	-
		무용과	한국무용	33	3		
			발레				
			현대무용				
	음악	피아노과		32	3		
		관현악과		36	3		
		성악과		26	2		
		작곡과		25	2		
	미술	시각·영상디자인과		34	3		
		산업디자인과		27	2		
		환경디자인과		26	2		
		공예과		34	3		
		회화과	한국화	27	2		
			서양화				
예·체능계 소계				326	3	제한없음	제한없음
모집인원 계				2,190	43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 재외국민의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정원 내)의 2%인 43명이고,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가능인원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교육학부는 1명 이내)로 하며, 계열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제변동, 입학정원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관현악과에 지원 가능한 전공악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바순	트럼펫	유포니움
비올라	오보에	색소폰	테너트롬본	타악기
첼로	클라리넷	호른	베이스트롬본	

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합니다.

(<http://exchange.sookmyung.ac.kr>, +82-2-710-9817)

바. '-'로 표시되어 있는 해당 모집단위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약학부는 6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대학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관련 안내는 별도로 발표하는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을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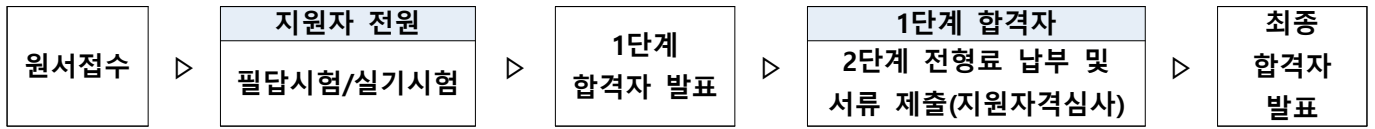
아.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한국어문학부	가족자원경영학과	화학과	피아노과
역사문화학과	아동복지학부(유치원정교사)	생명시스템학부	관현악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정치외교학과	수학과	성악과
중어중문학부	경제학부	응용물리전공	작곡과
독일언어문화학과	경영학부	컴퓨터과학전공	-
일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의류학과	-
문헌정보학과(사서교사)	테슬(TESL)전공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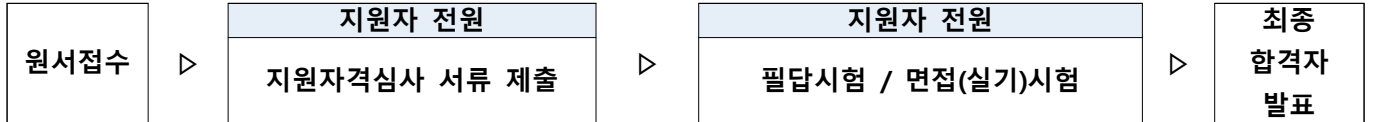
※ 교원양성센터 : <http://teaching.sookmyung.ac.kr>, 02-710-9027, 02-2077-7352

2. 전형일정

▶ 재외국민



▶ 새터민 ·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구분	재외국민	새터민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비고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7. 20.(월) 10:00 ~ 7. 22.(수) 17:00		· 입학처 홈페이지
	-	인문계/자연계 지원자 자기소개서 입력 7. 20.(월) 10:00 ~ 7. 23.(목) 17:00	
새터민, 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심사 서류 제출	-	7. 20.(월) ~ 7. 23.(목)	·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제출 불가
수험생유의사항안내	7. 29.(수) 17:00		· 시험시간 및 장소 안내 · 입학처 홈페이지
필답 및 면접(실기)시험	8. 5.(수)		· 해당 시험장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1단계 합격자 발표	8. 12.(수) 17:00	-	· 입학처 홈페이지
2단계 전형료 납부	8. 12.(수) 17:00 ~ 8. 13.(목) 17:00	-	·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지원자격심사 서류 제출	8. 12.(수) ~ 8. 14.(금)	-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제출 불가
합격자발표	9. 18.(금) 17:00		· 입학처 홈페이지
예치등록	12. 28.(월) ~ 12. 30.(수) 16:00까지		· 신한은행 및 전국은행
충원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00까지		·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예치등록	2020. 12. 31.(목) ~ 2021. 1. 5.(화) 16:00까지		· 신한은행 및 전국은행
본 등록 및 원본서류 제출	2021. 2. 8.(월) ~ 2. 10.(수) 16:00		· 신한은행 및 전국은행 · 원본서류 제출: 입학정보센터(행정관1층)

※ 새터민,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원서접수 안내

※ 우리대학은 원서접수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입학 후 학력조회 및 자격조회, 우리대학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교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진, 계좌정보)
※ 원서 사진은 수험표, 합격 후 학적부 등재, 학생증 발급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 ② 지원자 연락처, 주소, 이메일, 추가연락처, 학력 사항(출신학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재학기간)
※ 연락처는 총원합격 통보 등에 사용되므로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③ 보호자 국적, 근무처, 근무(영주, 거주)기간

다.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결제 후에는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복수지원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

- ①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재외국민 포함)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우리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 중복지원을 허용합니다.
- ②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6개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대학,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마. 서류제출 후에는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서류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지원자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이전),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합격자발표는 홈페이지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추가합격자발표는 개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은 지원자가 원서접수 시 작성한 본인 또는 추가 연락처로 개별통보하며, 우리대학의 지속적인 노력(3회 이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으니 연락두절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여러 전형에 중복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의 대학 또는 1개의 전형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다.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공통>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 관련 사항이나 양식은 해당 시기에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마.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로 정한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본 등록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우리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훈령 1호」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사. 합격 후 최종등록자는 원본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신체검사는 본 등록까지 마친 최종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타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자로 판정 받은 자는 입학 후 대학에서 휴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자가 제출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 각종 제출서류가 허위 기재, 표절, 대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 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전형별 자격 및 학력요건

전형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자녀 •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교과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글로벌서비스학부는 공인영어시험성적 TOEFL PBT 550, IBT 80, IELTS 5.5, TOEIC 750, TEPS 550 이상인 자(2018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여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성적만 인정).

※ 종교인은 재단을 통해 파송된 경우에만 해외근무자로 인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외재학기간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3)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5)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 학 기 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 학 기 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라. 해외체류일수 조건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이혼 전까지는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 이혼 후에는 친권자(친부 또는 친모) 및 계부 또는 계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4)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마.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외국 거주 및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바. 외국학교 인정 기준

-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 2) 외국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등·중등·고등·대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외국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 4)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사. 이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6. 제출서류

자격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			비 고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지원자격심사 신청서	○	○	○	○	○	원서접수 후 수험표 확인 페이지에서 출력
국내외 ①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②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증명서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사실증명서로 제출 *새터민의 경우 국내 재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	○	○	*사본 제출 가능 (최종등록시 원본제출)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외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서 포함(학사일정표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학생					* 원본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	○	* 원본 제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모,학생					* 서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여권사본	○ 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 원본 제출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 아래 표 참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거주지 구청 발급
학력확인서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 원본 제출
외국국적 증명서(시민권사본)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		
공인영어시험성적표			○	○	○	*글로벌서비스학부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	○	○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예·체능계 제외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1)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재직(경력)증명서
- 2) 상사직원 : ①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②외국한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①재직(경력)증명서, ②정부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 4) 현지법인 근무자 : ①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필히 명기), ②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법인세금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세금납입증명서
- 5) 자영업자 : ①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세금납입증명서
- 6) 종교인 : ①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파송증명서 (※재단을 통해 파송된 자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최종 등록 후 원본을 제출합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본 등록 기간 내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 후 지원자격 관련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2020. 7. 20.)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0. 4. 21. 이후)에 발행한 것만 인정합니다. 단, 기졸업자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원 자격심사 서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한 동일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⑤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자/양육권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부모의 사망	①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⑥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안내 <http://www.0404.go.kr>)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 재외 한국학교(별첨1) 출신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나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9. 5. 14. 현재)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⑦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⑧ 새터민 및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중 인문계, 자연계 지원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7. 전형방법

가. 시험과목 및 반영비율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합계
재외국민	인문계	50	50	-	-	100
	자연계	50	-	50	-	100
	예·체능계	40	-	-	60	100

- ▷ 1단계 필답시험(실기시험) 성적으로 **계열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단, 인문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소수점 올림 처리), 자연계열은 각 모집단위별 6명 이내, 예·체능계열은 각 모집단위별 3명 이내).
- ▷ 1단계 합격자는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한 후 지원 자격 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면접	합계
새터민	인문계	30	30	-	-	40	100
	자연계	30	-	30	-	40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인문계/자연계	-	-	-	-	100	100
	예·체능계	-	-	-	100	-	100

나. 예·체능계 실기시험 과목

대학	학과(전공)		실기시험 과목	실기시간
이과 대학	무용과	한국무용	· 개인작품 · 의상 - 상의 : V목선 긴팔 검정 레오타드(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검정색 풀치마(학교측 제공), 발목 있는 핑크색타이즈 착용 - 슈즈 : 반드시 흰색 코슈즈 착용(버선 착용 불가)	작품시간 3분 이내
		발레	· 개인작품 · 의상 - 상의 : V목선 긴팔 검정 레오타드 (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검정색 쉬폰치마(학교측 제공), 발목 있는 핑크색타이즈 - 슈즈 : 핑크토슈즈	
		현대무용	· 개인작품 · 의상 - 상의 : V목선 긴팔 검정 레오타드(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발목 없는 검정타이즈 - 슈즈 : 맨발	
		- 한국무용 살풀이, 승무 외의 다른 작품에는 절대 소품 사용을 금합니다. - 머리장식 사용과 화장은 일절 금합니다.		
	음악 대학	피아노과	총 2곡 · Etude 1곡, 자유곡 1곡	각 5분 내외
관현악과		자유곡 1곡	15분 내외	
성악과		총 2곡 · 독일가곡 (자유곡) 1곡 - 원어로 암송 · 이태리가곡 (자유곡) 1곡 - 원어로 암송	각 2분 30초 내외	
작곡과		3부형식의 피아노곡쓰기	3시간 이내	
미술 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연필정밀묘사(4절지)	3시간	
	회화과	정물소묘(4절지)	2시간	

8. 전형기준

가. 최종합격자는 전형구분 내(재외국민, 새터민,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각 계열별 전형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재외국민 내의 계열별(인문, 자연, 예·체능계) 모집인원에 미등락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동일 계열에서 충원하며 계열 내 충원인원이 없을 경우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열 순으로 타계열에서 충원합니다.

나. 필답시험(국어, 영어, 수학)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필답시험 성적 또는 면접(실기)시험 성적이 우리 대학교 선발원칙 전형기준에서 정한 최저학력기준(과목별 과락 및 평균 과락)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필답시험 또는 면접(실기)시험 결시자 및 서류미제출자(보완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마. 전형총점이 다른 학생의 성적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기타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재외국민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지정된 순위 이하는 우리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신입생 선발원칙에 따릅니다.

구분	계열	1순위
재외국민	인문계	국어 성적
	자연계	
	예·체능계	실기 성적

사. 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전형료

구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계
재외국민	150,000원	50,000원	200,000원
새터민	50,000원		50,000원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200,000원		200,000원

가. 재외국민의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다.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1]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2019. 9. 1. 기준)

국가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대만	홍콩한국국제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타이베이한국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학교

[별첨2] 새터민,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기소개서 견본양식

-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예·체능계 제외)

숙명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전 형 구 분	새터민 / 외국의전교육과정이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고 등 학 교	년	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년	월	검정고시 합격

-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취소 및 입학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지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월 1일

견본양식

작성자

원서접수 후 온라인으로 입력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면접시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어진 분량 이내로 작성합니다.
- 글자를 변형(진하게, 기울임, 밑줄, 음영 사용, 색깔 사용 등)하거나, 특수문자(★, ※, ▣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1. 지원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계획을 적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대학 진학 준비기간 동안의 관련 사례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견본양식

원서접수 후 온라인으로 입력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대학 진학 준비기간 동안의 관련 사례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별첨3]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양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포함 Yes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약 20분 내외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20분 내외

[6호선] 효창공원앞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약 20분 내외

지하철 역 주변 버스

[1호선 남영역 부근] 162, 262, 503, 505, 1711, 7016, 용산04

[4호선 숙대입구역 부근] 100, 150, 151, 152, 162, 421, 500, 501, 502,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752, 1711, 7016, 공항6001

[6호선 효창공원앞역 부근] 110A, 110B, 400, 740, 2016

[숙명여대 정/후문 하차] 400, 2016, 용산04

* 버스 노선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안내

- 전화상담 전화 : 02-710-9628 팩스 : 02-710-9098
- 주 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정보센터(행정관1층)
- 홈페이지 <http://admission.sookmyung.ac.kr>
- 전자우편 ipak@sm.ac.kr